

제4장 이용계약

제11조 (급여계약 등)

1.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제12조 (서비스제공 시간 및 계약기간)

1. 기관의 이용은 월~토요일로 하며 이용시간(송영시간 포함)은 08:00~20:00까지로 한다. 또한 신원 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경우 공휴일도 이용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5.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 대표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이용자 면회에 관한 권리
 -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1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6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신원인수인의 욕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 비용	중식비(1일 1회)	간식비 (1일 2회)	평일 8시간 월20일 이용 기준
금액	3,000원	1,000원	80,000원

제17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 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④ 비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제18조 (이용료 납부)

-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9조 (서비스)

-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비스 내용)

-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②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① 상담 : 전화, 내방, 방문(송영시)를 통하여 노년기의 성격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과 주간보호 이용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급·간식 : 이용노인의 영양에 맞는 식단으로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며 1일 2회 간식을 제공한다. (단, 중식은 필수제공이며, 석식은 이용자나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
 - ③ 의료 : 1일 1회 건강체크(혈압, 체온, 맥박)하고, 필요시 투약 및 물리치료(온열, 전기, 운동 등) 신체활동지원, 건강검진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④ 신체적 활동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이용노인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⑤ 심리적 적응프로그램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등으로 이용노인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과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말벗, 산책, 상담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한다.
 - ⑥ 인지기능 프로그램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 신체능력증진 - 뇌건강체조,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실버체조, 기공체조, 발마사지 등
 - 인지능력증진 - 워크북, 회상요법, 노래교실, 음악요법, 종이접기 등
 - 정서적지지 - 미술, 공예, 풍선아트, 클레이아트등
 - 여가활동 - 요리, 영화, 서예, 원예, 문화체험 등
 - ⑦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자립적인 신체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 손발톱정리, 구강관리, 양치지도, 손씻기, 목욕, 샴푸
 - ⑧ 사회적응프로그램 :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용노인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
 - 야외나들이, 명절행사, 마트체험, 요리활동, 생신잔치, 어버이날, 송년의 날 등
4.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특별보호)

1.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음)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